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5. 8. 28.
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. 8. 1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5. 8. 18.

다. 상정일자 :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5.08.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가족정책과장

가. 제안이유

- 아동의 자유로운 ‘놀 권리’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, 기후변화 등 환경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전용 시설로,
-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,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 운영 및 관리 사무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▶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및 제53조(아동 전용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위탁운영)

▶ 추진 필요성

- 계절·미세먼지 등 실외 환경적 제약 없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에 위탁 필요
- 위탁자는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,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,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·경제성 증대
- 전문성과 아동 복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성 제고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

▶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
- 돌봄 및 놀이 복합시설로의 운영 및 관리
- 조직·인사관리·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
-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 등

▶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및 면적

시설명	소재지	면적(㎡)	개관 예정일
염리동 쌍룡산근린공원점	염리동532-5 외1(염리동)	249.91	2025. 12.

- 위치도 및 조감도



위치도



조감도

▶ 민간위탁기간: 위·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

▶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▶ 소요예산(연간)

(단위: 천원)

구분	총계	시비	구비	비고
총계	199,362	129,662	69,700	
인건비 (3인기준)	148,362	109,262	39,100	시비: 2명까지 100%, 초과 인원 30% 구비: 1명 초과 인원의 70% * 20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
운영비	51,000	20,400	30,600	시비40%, 구비60%

▶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
-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·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,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·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▶ 향후일정(안)

- 2025. 09.: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
- 2025. 09.: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운영계획 수립
- 2025. 10.: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
- 2025. 11.: 위·수탁 협약체결
- 2025. 12.: 준공 및 개소식

다. 참고사항

▶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및 제53조(아동 전용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및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,
-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, 위탁 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실내 놀이터는 다수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, 청결한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,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